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월 15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5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심사하며,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
- ④ 제3항의 시험결과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

제9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국가보훈부의 증명이 가능한 취업지원대상자

제9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제5항과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사장이 최종합격자를 판정한다.
- ⑬ 만약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자	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 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합격자 결정)</p> <p>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류전형평정표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하여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.</p> <p>②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과 “별표 2”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한다.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</p> <p>③ 면접시험은 <u>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사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2.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5. 응용력, 창의력,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	<p>제9조(합격자 결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다음 각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심사하며,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판정한다.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

1. 필기시험 고득점자
2. 군포시 장기 거주자
3.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
4. <신 설>

<신 설>

⑤ ~ ⑪ (생략)

<신 설>

④ ----- 시험결과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4. 국가보훈부의 증명이 가능한 취업지원대상자

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사장이 최종합격자를 판정한다.

⑥ ~ ⑫ (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과 같음)

⑬ 만약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.